##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수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486

발의연월일: 2025. 5. 12.

발 의 자: 박수현 · 윤종오 · 이개호

임오경 · 조계원 · 윤준병

이정문 · 김재원 · 황운하

조인철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농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대책을 마련하여 농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이상고온과 지진 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, 대형 산불로 인하여 농업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음에 도 현행법은 이를 농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대 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농업재해의 범위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음.

한편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와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으나, 이 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농어업 재해로 인한 특별지원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.

아울러 재해 피해로 인한 농어가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, 현행법은 재해 피해에 대한 복구나 생계비 지원 등 생계구호수준에 그치고 있 을 뿐 농어가들이 재해 발생 전에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전해주거나 농어가의 경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재해 피해를 온전히 보상해주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 요함.

이에 정부가 농업인들의 생산비를 고려한 충분한 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,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농가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.

#### 주요내용

- 가. 농업재해의 범위에 지진, 산불, 이상고온을 포함하도록 함(안 제2 조제2호).
- 나.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라 재해대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·시행하도록 함(안 제2조의2 신설).
- 다.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일정요건 충족 시 특별농 어업재해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의2 신설).
- 라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보조하도록 함(안 제4조제1항).

마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하여 재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(안 제4조제8항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#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"이상저온(異常低溫)"을 "지진, 산불, 이상고온(異常高溫). 이상저온(異常低溫)"으로 한다.

제2조의2 및 제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 및 어업재해를 예방하고 농가·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또는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3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재해대책의 목표
- 2.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
- 3.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4.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
- 5. 상습침수구역 대책 등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
- 6. 재해대책을 통한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- 7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기본계획에 따라 재해대책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 시행하여야 한다.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련 기관·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3조의2(특별농어업재해지역의 선포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해가 발생하여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농어업재해지역의 선포를 요청하고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경우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농어업재해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재해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- 1.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
- 2. 재해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
- 3. 재해로 피해를 입은 구역의 범위
- ③ 제1항에 따라 특별농어업재해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농어업재해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특별농어업재해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4조제1항 본문 중 "재해대책에 드는"을 "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"비료대금"을 "비료대금 등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.

다.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

-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기준을 정하여야 한다.
-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대통령 링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농가 및 어 가에 대하여는 재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피해보상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"농업재해"란 가뭄, 홍수, 호	2
우(豪雨), 해일, 태풍, 강풍,	
이상저온(異常低溫), 우박, 서	<u>지진, 산불, 이상고온(異</u>
리, 조수(潮水), 대설(大雪),	常高溫), 이상저온(異常低溫)-
한파(寒波), 폭염(暴炎), 황사	
(黃砂)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병해충(病害蟲), 일조량(日照	
量) 부족, 유해야생동물(「야	
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	
법률」 제2조제5호의 유해야	
생동물을 말한다. 이하 같다),	
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	
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	
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	
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, 농	
경지, 농작물, 가축, 임업용	
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	
말한다.	
	<u>.</u>
3. ~ 13. (생 략)	3. ~ 13.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- 제2조의2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 및 어업재해를 예방하고 농가·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또는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업재해대책기본계획(이하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3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재해대책의 목표
  - 2.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
  - 3.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 및 지원에 관한사항
  - 4.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
  - 5. 상습침수구역 대책 등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개선에 관한 사항
  - 6. 재해대책을 통한 농어가의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- 7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 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 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는 기본계획에 따라 재해대책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 야 한다.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련 기관·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한다.
-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제3조의2(특별농어업재해지역의

<신 설>

선포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 해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특별농어업재해 지역의 선포를 요청하고 그 요 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 농어업재해지역으로 선포할 것 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재해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-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
   재해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
   의 재정 능력
- 3. 재해로 피해를 입은 구역의 범위
- ③ 제1항에 따라 특별농어업재 해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 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농어 업재해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 다.

제4조(보조 및 지원) ① 국가와 기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 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 다. 다만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,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,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을 지급 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, 지원 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되,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「농어 업재해보험법」 및 「풍수해・ 지진재해보험법」에 따라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
지역에서 발생한 재해로 인하
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
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
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
특별농어업재해지역의 선포 건
의를 요청할 수 있다.
제4조(보조 및 지원) ①
<u>재해 이전까지</u>
<u>생산에 투입된</u>
,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 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 음 각 호에 따른다.
- 1. 2. (생략)
- 3.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: 종묘대금 및 <u>비료</u> <u>대금</u>
- 4. ~ 10. (생략)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 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 음 각 호에 따른다.
- 1.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 의 피해가 있는 경우 가.·나. (생 략)

### <신 설>

- 2. ~ 4. (생략)
- ④ ~ ⑥ (생 략)
-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

②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
<u>用</u>
료대금 등 재해 이전까지 투
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
일부
4. ~ 10. (현행과 같음)
③
, 1
1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다.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
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
2. ~ 4. (현행과 같음)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7

기본법」을 준용하되,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(이하 "공동부령"이라 한다)으로 정한다. <후단 신설>

<신 설>

⑧ (생 략)

-----. 이 경우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기준을 정하여야 한다.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 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하여는 재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피해 보상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⑨ (현행 제8항과 같음)